

動物藥事

□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新規 許可

업 체 명 (허가일자)	대표자	제 조 소	비 고
(주)영보코리아 (2001. 6. 1)	박종대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7-9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許可事項 變更

업 체 명 (변경일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태경 (2001. 6. 4)	업체명	(주)태경	(주)빅솔
삼우화학공업 (주) (2001. 6. 14)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9-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4-15
(주)엘지씨아이 (2001. 6. 22)	제조소	공장 신설	제3공장 : 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601

□ 動物用醫藥品等 輸入管理者 新規 承認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수 입 관리자	소 재 지	비 고
세베로상사 (제166호)	전화자	김성연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8-6 명선빌딩 4층	동물약품 도매업
세랑푸라우 코리아(주) (제167호)	로스이반 언더우드	윤미정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73 볼보빌딩 2층	

□ 動物用醫藥品等 輸入者 確認事項 變更

업 체 명 (변경일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중앙무역 (2001. 5. 30)	대표자	강구식	배규익
(주)태경 (2001. 6. 04)	업체명	(주)태경	(주)빅솔
(주)동도메드 (2001. 6. 07)	업체명	(주)동도메드	(주)동도바이오텍
(주)범한약품 (2001. 6. 25)	대표자	이세진	김문식

□ 家畜疾病病性鑑定實施機關 新規 指定

기 관 명 (지정일자)	소 재 지	대 표 자	연 락 처
(주)내오딘 (2001. 6.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5 우영테크노센터 2층	성 동 제	02-498-2340

□ 統合公告中 動物藥品 關聯條項 改正 意見 提出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BSE와 관련 동물용의약품의 수입관리를 위하여 통합공고 중 동물용의약품 관련 조항 및 수입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 의견에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입되는 신규품목과 기존에 동물용의약품 해당 세번이었으나 통합공고 개정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던 세번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수입요령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가. 통합공고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41조(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①,② (현행과 같음)

③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는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다.

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또는 BSE 미감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④ ③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는 당해 품목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별표 2. 품목별 수입요령 개정

- BSE 관련 수입요령 개정 : 329개 세번
- 동물용의약품 적용대상 신규 반영 : 7개 세번
- 기존 동물용의약품 해당 세번이었으나 통합공고 개정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세번 추가 반영 : 61개 세번

□ 江原道 돼지콜레라 淸淨化 地域 告示

강원도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강원도고시 제2001-118호, 2001.06.23)를 통해 2001년 7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대해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상태로 제주도와 울릉도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하였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내륙과 격리된 도서지역이었으나 강원도는 내륙지방으로는 처음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

1. 목적 : 강원도를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예방약 유통을 금지 조치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으로부터의 가축이동을 통제하여 가축방역의 효율성 도모 및 강원도의 청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실시지역 : 도내 전지역
3. 대상가축 및 질병의 종류
 - 가. 대상가축 : 사육하는 모든 돼지 (멧돼지 포함)
 - 나. 질 병 명 : 돼지콜레라
4. 시행일자 : 2001. 7. 1부터
5. 기타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지역에서 강원도로 반입되는 돼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와 각 시도의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발행한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성적서를 소지하여야 함.

獸醫師法中改正法律案 立法豫告

농림부는 농림부공고 제2001-59호(2001. 6. 26)로 수의사법중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개정이유

당초 시·도지사 업무인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의 업무가 지방 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골자
 - 가. 동물병원 개설, 휴·폐업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함
 - 나. 공수의 위촉대상을 당초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및 동물병원 근무 수의사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다. 당초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질병진료상황,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동물병원의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 검사업무를 시·도지사 업무로 함
 - 라. 동물진료업의 정지 업무를 당초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함
 - 마. 현행 수의사법 개정일(1999.3.31)이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자로서 수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함

- 제1호의안 : 국검차량 매각처분(안)
 - 결과 : 원안의결
- 제2호의안 : KVGMP지정 적격제형 협의의 건
 - 결과 : 유관기관과 협의 후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
- 제3호의안 : 동물약품 윤리강령 제정(안)
 - 결과 : 동물약품 윤리강령을 제정하되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함

動物藥事監視 行政處分 結果 弘報

6월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특별시, 강원도에서 실시한 동물약사감시 수거검사 결과 3개 업체 3품목이 성분함량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해당품목 경고 1건,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개 업체 1품목이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4분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청문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약사감시 위반사례

위반내용	위반건수	행정처분내역
허가사항 이외의 표시사항 기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	10	경고
원료,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9	경고
각종 준수사항 미이행 (제조업자, 수입자, 제조관리자)	6	경고
제품표준서 미작성	5	경고
제조일지, 시험대장 미작성	3	경고
품질관리기준서 미작성	2	제조정지 (청문실시)
제조관리자 비상근	2	경고
수입품 시험검사 미실시	2	경고
품목허가사항 임의변경	1	해당품목 업무정지1월 (청문실시)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1	경고
제조시설 미비	1	경고

動物藥界

協會 第3次 理事會 開催

- 일 시 : 2001년 6월 18일 15시
- 장 소 : 중소기업회관 2층 제1소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이사 17명중 11명(감사1명) 참석
- 안건심의

生物學的製劑 需給 協議會 開催

- 일 시 : 2001년 6월 4일 15시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체
- 협의안건
 - 3/4분기 생물학적제제 수급 협의